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¹⁾

김은영 연구위원 김길숙 부연구위원 이연주 연구원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제도, 양성과정, 임용 및 배치, 처우 등이 모두 다르다. 현재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제도, 양성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을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원장 및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후에 이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서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교사자격에 대한 통합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와 양성과정, 임용 및 배치, 처우 등이 모두 다르다. 유치원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국공립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사립교사는 원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되어 배치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교사는 고졸 이상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원장의 재량에 따라 채용되어 배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와 어린

이집교사는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과 연수(보수교육)시간도 상이하며, 연수(보수교육)를 주관하는 기관도 다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제도 및 양성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 과정을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원장 및 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후에 이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행한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

2.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기준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규정되고 어린이집교사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은 준교사-정교사 2급-정교사 1급-수석교사-원감-원장의 자격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준교사는 양성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기준 7명만이 남아 있고, 수석교사는 15년 이상 경력의 일부 우수한 교사에게 일정한 연수를 거쳐 검정·수여하는 자격으로 대부분은 정교사 2급-정교사 1급-원감-원장의 자격 체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3급-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1급-원장의 자격체제이다. 보육교사양성기관에 따라 보육교사 3급이나 2급으로 시작하며, 유치원과 달리 원감자격과 수석교사 제도가 없다.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원장의 자격기준이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육교사 이외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부록 1〉 참조, p.13).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도 아직까지는 유치원이 좀 더 엄격한 편이다. 최근 보육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을 유치원과 유사하게 맞추었지만 재교육이나 승급교육의 시간이 다르며, 특히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어린이집이 훨씬 느슨하다. 유치원에는 원감제도가 있기 때문에 원장이 되기 위해

서는 최소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재교육이 필요한 반면²⁾, 어린이집 원장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여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경우 경력 6년이면 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보육경력 없이도 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교육과정

유치원 교사는 2·3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학과,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나, 유치원 교사 양성의 중심은 2, 3,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 2·3년제 대학 보육학과 및 관련학과,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성되며, 유치원 교사와 다르게 학과 중심이 아닌 학점이수 중심의 양성체제를 가지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한 전공이수학점은 유치원 50학점 이상, 어린이집은 48학점이상이며, 실습이수학점 역시 유치원 4학점, 어린이집 3학점으로 유사하다. 이는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의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 이수 기준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보육실습 학점이 2학

2) 제도상으로 유치원교원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이 각각 3년(2급에서 1급, 1급에서 원감, 원감에서 원장)으로 원장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경력은 9년이나, 실제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림.

점에서 3학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하지만 유치원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직원역 학점 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학점은 유치원 72학점, 어린이집 51학점으로 차이가 있다(〈부록 2〉 참조, p.14). 한편 유치원 교사양성교육과정은 이수학점의 양보다는 질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2013년 입학자부터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점/100에서 전공 75점, 교직 8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근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를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부터 필수적으로 다루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성과정 중 예비교사의 인성과 적성 검사에서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실습기준은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인정기간, 실습시기, 실습 지도교사, 실습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부록 3〉 참조, p.15). 먼저, 실습기관의 경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에서만 실습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다. 실습기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평균적으로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실습 이외에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 실습 시기는 대학 및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부분은 보육실습에만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습평가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의 경우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교직

과목의 경우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교직과목 중 하나인 교육실습도 이에 준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야 하므로 기준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체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287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569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909명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가. 자격제도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제도에 대한 조사 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이 같아야 한다.’, ‘영아·유아 교사 자격은 같아야 한다.’, ‘학력에 따라 자격이 차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며, 전문가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역할에 따라 자격이 차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며, 조사대상 간 차이는 없었다. ‘설립유형에 따라 자격을 차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며, 전문가의 반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제도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 같아야		영아·유아 교사 자격 같아야		학력에 따른 자격 차등화		역할에 따른 자격 차등화		설립유형에 따른 자격 차등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문가	72.1	27.9	62.4	37.6	81.9	18.1	82.6	17.4	27.9	72.1
원장	62.2	37.8	54.7	45.3	74.5	25.5	86.3	13.7	42.9	57.1
교사	66.8	33.2	61.2	38.8	68.2	31.8	86.2	13.8	45.3	54.7
$\chi^2(df)$	8.7(2)*		7.5(2)*		22.2(2)***		2.6(2)		27.8(2)***	

출처: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66.

* $p < .05$. *** $p < .001$.

2)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에 대한 조사 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유치원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을 전문가와 원장은 4년, 교사는 3년으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으로

전문가는 4년, 원장과 교사는 3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통합 시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유치원교사와 유사하게 전문가와 원장은 4년, 교사는 3년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원장에 비해 교사가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을 1년 정도 짧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격 부여를 위한 적정 수업연한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통합 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전문가	0.0	4.5	25.1	68.3	2.1	1.7	15.3	30.0	52.3	0.7	0.7	5.9	22.3	69.7	1.4
원장	1.4	6.7	34.8	48.9	8.3	1.6	23.6	39.9	29.3	5.6	4.6	10.7	31.6	44.3	8.8
교사	3.1	10.3	44.7	33.3	8.6	3.4	26.3	45.8	19.9	4.6	5.1	15.0	41.0	29.2	9.8
$\chi^2(df)$	125.9(8)***					122.6(8)***					161.3(8)***				

출처: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67.

*** $p < .001$.

3) 바람직한 유아교사 양성 방식

바람직한 유아교사 양성방식에 대한 조사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유치원 교사와 통합교사 양성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학과중심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가는 학점중심

으로 응답한 반면, 원장과 교사는 학교중심으로 응답하였다. 보육교사 양성방식 또한 유치원교사와 같이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학과중심으로 양성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문가와 교사는 학점중심으로 응답한 반면, 원장은 학교중심으로 응답하였다.

〈표 3〉 바람직한 유아교사 양성 방식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통합 시		
	학교 중심	학교 중심	학점 중심	학교 중심	학교 중심	학점 중심	학교 중심	학교 중심	학점 중심
전문가	7.7	82.9	9.4	4.2	81.5	14.3	7.3	81.5	11.1
원장	22.8	70.8	6.3	13.9	77.5	8.6	22.1	70.5	7.4
교사	17.2	72.1	10.8	9.9	76.7	13.4	16.2	71.7	12.1
$\chi^2(df)$	37.2(4)***			26.6(4)***			36.7(4)***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68.

*** $p < .001$.

4) 교사 자격 강화를 위한 의견

교사 자격 강화를 위한 의견에 대한 조사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유치원교사 자격의 경우 ‘국가고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전문가는 44.3%, 원장은 61.2%, 교사는 56.5%가 찬성하였으며, ‘취득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전문가가 52.3%, 원장 64.1%, 교사 60.0%가 찬성하여 원장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취득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모든 대상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며, ‘국가고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원장과 교사 과반수가 찬성한 반면 전문가는 과반수가 반대하여 차이를 보였다. 한편 유치원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과목에 성적 기준이 필요하다.’, ‘양성기관에 평가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해서는 88~9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표 4〉 교사 자격 강화를 위한 의견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 필요		취득 기준 강화 필요		국가고시 도입 필요		취득 기준 강화 필요		인·적성 검사 의무화		과목 성적 기준 필요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필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문가	44.3	55.7	52.3	47.7	39.7	60.3	74.2	25.8	97.2	2.8	93.0	7.0	90.2	9.8
원장	61.2	38.8	64.1	35.9	64.0	36.0	84.0	16.0	99.1	0.9	97.0	3.0	94.6	5.4
교사	56.5	43.5	60.0	40.0	53.9	46.1	77.2	22.8	96.9	3.1	94.6	5.4	88.2	11.8
$\chi^2(df)$	22.3(2)***		11.2(2)**		46.0(2)***		14.2(2)**		7.8(2)*		7.6(2)*		14.5(2)***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69.

$p < .05$. ** $p < .01$. *** $p < .001$.

나. 교사양성교육과정

1)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의견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의견에 대한 조사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교양과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는 53.7%, 원장은 65.4%, 교사는 53.3%가 찬성

하여 원장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아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 원장, 교사 70%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조사대상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공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실습 이수 학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대해서는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전문가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의견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교양과목 비중 확대		영아 관련 과목 이수		전공 필수 이수과목 지정		실습 이수학점확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문가	53.7	46.3	74.2	25.8	77.4	22.6	58.5	41.5
원장	65.4	34.6	77.0	23.0	95.3	4.1	86.0	14.0
교사	53.3	46.7	70.7	29.3	96.7	3.3	87.0	13.0
$\chi^2(df)$	10.3(2)*		2.9(2)		71.9(2)***		84.0(2)***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207-208.

* $p < .05$. *** $p < .001$.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영역별 바람직한 이수과목 비율에 대한 조사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전문가는 전공 59.8%, 교직 20.5%, 교양 19.7%로 응답하였고, 원장은 전공 51.2%, 교직 30.3%, 교양 18.5%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전공 51.9%, 교직 30.1%, 교

〈표 6〉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 영역별 바람직한 이수과목 비율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교양	전공	교직
	M(SD)	M(SD)	M(SD)
전문가	19.7(8.0) ^b	59.8(11.0) ^b	20.5(8.3) ^b
원장	18.5(7.2) ^{ab}	51.2(11.1) ^{bc}	30.3(8.6) ^{bc}
교사	18.0(7.9) ^a	51.9(11.3) ^b	30.1(8.9) ^b
F	3.6*	52.3***	119.7***

주: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209.

* $p < .05$. *** $p < .001$.

2)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의견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의견에 대한 조사 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7>과 같다.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 원장, 교사

모두 70%이상 찬성 하였으며, '교양과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는 60.6%, 원장은 67.9%, 교사는 52.5%찬성을 하였다. '실습 이수학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원장과 교사는 80%이상 찬성하였고, 전문가는 65.2%가 찬성하였다.

<표 7>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의견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교양과목 비중 확대		교직 과목 이수		전공 필수 이수과목 지정		실습 이수학점 확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문가	60.6	39.4	78.0	22.0	73.5	26.5	65.2	34.8
원장	67.9	32.1	93.6	6.4	94.2	5.8	87.8	12.2
교사	52.5	47.5	90.0	10.0	87.4	12.6	81.8	18.2
$\chi^2(df)$	20.9(2)***		38.6(2)***		55.1(2)***		51.2(2)***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209-210.

*** $p < .00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영역별 바람직한 이수 과목 비율에 대한 조사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8>과 같다. 전문가는 전공 61.0%, 교양 19.9%, 교직 19.1%로 응답하였고, 원장은 전공 49.5%, 교직 29.8%, 교양 20.7%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전공 49.9%, 교직 29.1%, 교양 21.0%

로 응답하였다.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전공과목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교직과목에 있어서는 원장과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8>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영역별 바람직한 이수과목 비율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교양	전공	교직
	M(SD)	M(SD)	M(SD)
전문가	19.9(8.2)	61.0(12.0) ^b	19.1(9.3) ^b
원장	20.7(8.5)	49.5(11.2) ^{bc}	29.8(9.5) ^{bc}
교사	21.0(9.6)	49.9(12.1) ^a	29.1(9.9) ^a
F	1.5	98.5***	123.7***

주: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211-212.

*** $p < .001$.

3) 통합 시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실습 이수학점 및 기간

통합 시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실습 이수학점 및 기간에 대한 조사대상별 인식을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전문가는 사전실습 1.7학점 12.2일, 본 실습 2.9학점 24.2일, 사후실습 1.7학점 11.3일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원장은 사전실습 2.7학점 14.3일, 본 실습 3.9학점 25.7일, 사후실습 1.7학점 11.3일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사전실습 2.6학점 15.1일, 본 실습 3.7학점 25.5일, 사후실습은 2.6학점 15.3일이 평균이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에 비해 원장과 교사가 실습 이수학점과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9> 통합 시 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실습 이수학점 및 기간에 대한 대상별 인식 비교

단위: %

구분	사전실습		본 실습		사후실습	
	학점	기간	학점	기간	학점	기간
전문가	1.7 ^b	12.2 ^b	2.9 ^b	24.2	1.7 ^b	11.3 ^b
원장	2.7 ^{ac}	14.3 ^{ab}	3.9 ^{ac}	25.7	2.8 ^{ac}	15.0 ^{ac}
교사	2.6 ^a	15.1 ^a	3.7 ^a	25.5	2.6 ^a	15.3 ^a
F	8.9***	5.9**	5.0**	0.8	10.8***	9.9***

주: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211.

** p < .01. *** p < .001.

4. 정책제언

이상의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와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제언의 방향은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포함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교사 자격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므로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하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자격제도 개편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 자격 체계는 2급 교사→1급 교사→(수석교사)→원감→원장으로,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은 각 3년으로 제안한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련의 체계가 아닌 일정한 절차를 거친 교사를 검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초·중·고 체계와 연계하여 고려한다면 현재처럼 검정자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밖에 방과후과정이나 오후를 담당하는 교사, 보조교사는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별도의 기관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의 학과 중심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학과 명칭은 유아교육학과와 보육학과에 한정하며, 아동학과 및 아동복지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처럼 일정비율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는 길은 열어놓을 수 있다. 정규대학 이외의 기관은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보조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되기 위한

수업연한은 장기적으로 4년 이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보육학과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전문대에 설치되어 있는 유아교육과와 보육과는 4년제로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를 만든다. 기존교사 중 학사학위가 없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특례제도를 통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되, 이를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는 담임교사 이외의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고시를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현행 유치원교사 자격제도처럼 보육교사도 공히 인·적성 검사 의무화와 함께 이수 과목의 성적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교사양성교육과정 재정비

첫째, 유치원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이수과목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아 관련 과목도 필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양, 전공, 교직의 비율은 20:60:20 정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이수과목 편성과 함께 그 안의 교육과정 과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과목에 따른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양성기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실습에 관해서는 선진국들에서 많은 1년 정도의 실습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초·중등 교사 양성과 맥을 같이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 실습 2학점, 본 실습 3학점, 사후실습 2학점 이수를 제안한다. 이와 병행하여 실습 대상과 다양한 수업 경험을 포함하는 표준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교사라면 누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를 교육할 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실습생을 받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지도교사가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습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실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제도 및 양성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원장, 교사의 인식을 토대로 자격제도 개편 및 교사양성교육과정 재정비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 시 합리적인 체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부록

〈부록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자격기준 비교

구분	유치원	구분	어린이집
준교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정교사 2급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출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정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수석 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원감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일반기준〉	
원장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원장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음.	〈가정 어린이집〉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영아전문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료: 유아교육법 [시행 2014.4.29.] [법률 제12336호, 2014.1.28., 일부개정], 제22조1항 별표 1, 제22조2항 별표 2,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19호, 2014.5.20., 일부개정], 제21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2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1조 별표 1.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22-23(표 II-1-2)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급수별 자격기준 비교와 p. 24-25(표 II-1-3)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원감 자격기준을 합하여 재정리함.

부록

<부록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 기준 비교

영역	유치원(유치원 정교사 2급)	어린이집(보육교사 2급)
전공 영역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보육필수: 6과목(18학점) 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발달 및 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 이해, 장애아지도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	영유아 교육: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건강·영양 및 안전: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선택과목 기본이수과목의 잔여학점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어린이집운영과 관리
소계	50학점 이상	16과목(48학점)이상
교직 영역	· 교직이론: 6과목(12학점)이상 선택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해당없음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해당없음
교직 영역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소계	22학점 이상	1과목(3학점)이상
전체	72학점 이상	17과목(51학점) 이상

자료: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 제2014-48호, 2014.09.02., 전부개정] [별표 1]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별표 3]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4.03.0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 2014.03.07., 일부개정] [별표4]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별표 5]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출처: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30-31.

〈부록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실습기준 비교

영역	유치원	어린이집
실습 기관	·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시
실습 기간 및 인정 시간	〈학교현장실습〉 ·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실습, 1일 실습기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실습 기간 및 인정 시간	〈교육봉사활동〉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실습 시기	·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육실습 대상 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는 양교의 협의에 따라 실시가 가능함. ·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실습 지도 교사	-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
실습 평가	· 학교현장실습은 교직과목에 속하며,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료:교육부(2014). 201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출처:김은영, 김길숙, 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체제 분석, 유아정책연구소. p. 32.